

문화협력에 관한 의정서

양 당사자는,

2005년 10월 20일 파리에서 채택되고 2007년 3월 18일 발효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유네스코 협약**(“유네스코 협약”)을 제15.10조(발효)제3항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비준한 후, 유네스코 협약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그 이행의 틀 내에서 협력할 의도로 그 협약의 원칙에 기초하여 그 협약의 규정들과 맞는 조치를 개발하고,

문화산업의 중요성과 문화적, 경제적 및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으로서의 문화 상품 및 서비스의 다면적인 성격을 인정하고,

이 협정에 의해 지지되는 과정이 공평한 성장과 양 당사자 간의 경제, 무역 및 문화 협력 강화를 증진하기 위한 세계적인 전략에 기여함을 인정하고,

이 의정서의 목적이 다음을 위하여 다른 체제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기존 및 미래의 정책 수단에 의해 보완되고 지지됨을 상기하면서,

가. 양 당사자의 문화 산업의 역량과 독립성의 강화

나. 지방/지역 문화 콘텐츠의 진흥

다. 문화간 성공적인 대화를 위한 조건으로서 문화적 다양성의 인정, 보호 및 증진, 그리고

라. 문화유산의 인정, 보호 및 증진, 그리고 문화유산에 대한 지방민의 인정 증진과 문화 정체성 표현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문화유산의 가치의 인정

양 당사자 간의 문화협력 촉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러한 목적으로, 사안별로, 특히 각국의 문화산업 발전 정도, 문화교류의 수준과 구조적인 불균형, 그리고 지방/지역 문화 콘텐츠 진흥 체제의 존재를 고려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 1 조

적용범위 · 목적 및 정의

1. 이 협정의 그 밖의 규정을 저해함이 없이, 이 의정서는 양 당사자가 특히 시청각 분야를 포함하여 문화 활동, 상품 및 서비스에 관한 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협력하는 틀을 마련한다.

2. 제7장(서비스 무역 · 설립 및 전자상거래)의 적용범위에서 시청각 서비스를 제외하는 것이 이 의정서로부터 도출되는 권리와 의무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이 의정서의 이행과 관련한 모든 문제에 대해, 양 당사자는 제3조 및 제3.2항에 규정된 절차를 이용한다.

3. 양 당사자는 자신의 문화정책을 구체화하고 이행하는 역량을 유지하고 더욱 발전시키는 한편, 문화적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문화 활동, 상품 및 서비스의 교류를 규율하는 조건을 개선하고 교류에 존재할 수 있는 구조적인 불균형과 비대칭적 패턴을 바로잡을 목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한다.

4. 이 의정서의 목적상,

문화적 다양성, 문화 콘텐츠, 문화적 표현, 문화 활동, 상품 및 서비스, 그리고 **문화 산업**은 유네스코 협약에서 정의되고 사용된 것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그리고

예술가와 그 밖의 문화 전문가 및 실연자란 문화 활동을 수행하거나, 문화 상품을 생산하거나, 문화 서비스의 직접 공급에 참여하는 자연인을 말한다.

제 1 절 수평적 규정

제 2 조 문화 교류 및 대화

1. 양 당사자는 자신의 문화정책을 결정하고 개발하기 위한 자신의 역량을 육성하고, 자신의 문화 산업을 발전시키고, 지방/지역 문화 콘텐츠 진흥 체제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 부여를 통한 것을 포함하여 양 당사자의 문화적 상품 및 서비스의 교류 기회를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양 당사자는 지적재산권 보호 분야에서의 모범 관행에 관해서 뿐만 아니라 문화 및 시청각 사안에 관해서 대화를 통해 공동 이해의 발전과 제고된 정보 교환을 증진하기 위하여 협력한다. 이 대화는 적절한 경우 당사자 간의 그 밖의 관련 포럼에서만 아니라 문화협력 위원회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제 3 조 문화협력 위원회

1. 이 의정서가 적용된 후 6개월 이내에 문화협력 위원회가 설치된다. 문화협력 위원회는 문화적 사안 및 관행에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각 당사자의 행정부 소속 고위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2. 문화협력 위원회는 이 의정서가 적용된 후 1년 이내에, 그 이후에는 필요에 따라 그리고 적어도 1년에 한 번 이 의정서의 이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회합한다.

3. 제15장(제도·일반 및 최종 규정)의 제도적 규정을 이탈하여, 무역위원회는 이 의정서에 대한 관찰권이 없으며, 그러한 기능이 이 의정서를 이행하기 위한 목적에 관련되는 경우 문화협력 위원회가 이 의정서에 관하여 무역위원회의 모든 기능을 수행한다.

4. 각 당사자는 이 의정서를 이행하기 위한 목적상 다른 쪽 당사자와의 국내 접촉선 역할을 하는 사무소를 자신의 행정부 내에 지정한다.

5. 각 당사자는 이 의정서의 이행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자문을 위해, 이 의정서의 적용대상인 분야에서 활동하는 문화 및 시청각 대표자들로 구성된 문화협력에 관한 국내자문그룹을 설치한다.

6. 당사자는 문화협력 위원회에서 이 의정서에서 발생하는 상호 관심 있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 다른 쪽 당사자와의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문화협력 위원회는 그 이후 신속하게 회합하여 그 사안에 대해 상호 만족스러운 해결책에 도달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 그렇게 함에 있어 문화협력 위원회는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자의 국내자문그룹에게 자문할 수 있으며, 각 당사자는 자신의 국내자문그룹에게 자문할 수 있다.

제 3 조의 2 분쟁해결

양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그리고 이 의정서 제3조제6항에서 언급된 사안이 그 조항에 규정된 협의절차를 통해 만족스럽게 다루어지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한해, 제14장(분쟁해결)이 다음의 수정을 조건으로 이 의정서에 적용된다.

가. 무역위원회에 대한 제14장(분쟁해결)의 모든 언급은 문화협력 위원회를 언급하는 것으로 양해된다.

나. 제14.5조(중재패널 설치)의 목적상, 양 당사자는 이 의정서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안에 대해 필요한 지식 및 경험을 가진 중재인에
관해 합의하도록 노력한다. 양 당사자가 중재패널의 구성에 관하
여 합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4.5조제3항에 규정된 추천에 의
한 선정은 제14.18조(중재인 명부)에 따라 작성된 명부가 아니라
다호에 따라 작성된 명부로부터 이루어질 것이다.

다. 문화협력 위원회는 그 설립 후 신속하게 중재인으로서 역할을 수
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개인 15인의 명부를 작성한다. 각 당사
자는 중재인의 역할을 수행할 개인 5인을 추천한다. 또한 양 당사
자는 어느 쪽 당사자의 국민도 아니며 중재패널의 의장으로 활동
할 개인 5인을 선정한다. 문화협력 위원회는 그 명부가 항상 이
수준에서 유지되도록 보장할 것이다. 중재인은 이 의정서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안에 대해 지식 및 경험을 가진다. 중재인의 역할
을 수행함에 있어, 그들은 독립적이고, 개인 자격으로 역할을 수
행하고, 그 분쟁에 관한 사안에 대해 어떠한 기관 또는 정부로부터
지시를 받지 아니하며, 부속서 14-다(중재패널 구성 및 중재인
에 대한 행동 규범)를 준수한다.

라. 이 의정서에서 발생하는 분쟁에서 제14.11조(불이행의 의무 일시
적 구제)제2항에 따라 정지할 의무를 선택함에 있어, 제소당사자
는 이 의정서에서 발생하는 의무만 정지시킬 수 있다. 그리고

마. 제14.1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의정서에서 발생하는 분쟁 외의
분쟁에서 정지할 의무를 선택함에 있어 제소당사자는 이 의정서
에서 발생하는 의무를 정지시킬 수 없다.

제 4 조

예술가와 그 밖의 문화전문가 및 실연자

1. 양 당사자는 제7장(서비스 무역·설립 및 전자상거래)에 근거하여 행
하여진 약속을 이용할 수 없는 자들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쪽
당사자로부터의 예술가와 그 밖의 문화전문가 및 실연자의 그들 영역으로의

입국 및 일시 체류를 각자의 법령에 합치되게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가. 영화 또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촬영에 관여된, 다른 쪽 당사자로
부터의 예술가, 배우, 기술자, 그리고 그 밖의 문화전문가 및 실연
자, 또는

나. 그 밖의 다른 활동 중에서 예를 들어, 음악 녹음과 같은 문화활동
에 관여하거나 문학 박람회 및 축제 같은 문화행사에 적극 기여
하는 다른 쪽 당사자로부터의 시각, 조형 및 공연 예술가와 지휘
자, 작곡가, 작가,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제공자와 그 밖의 유사한
전문가 및 실연자와 같은 예술가와 그 밖의 문화전문가 및 실연
자

다만, 이들이 일반 대중에게 자신의 서비스를 판매하거나 자신의 서비스
를 직접 공급하는 데 종사하지 아니하고,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당사자 내에
위치한 소득원으로부터 자신을 위하여 어떠한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예술가
는 그 밖의 문화전문가 또는 실연자가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당사자 내에
상업적 관계를 가지지 아니한 법인과 그 당사자 내의 소비자 간에 체결된
계약의 틀 내에서 서비스 공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제1항에 따른 양 당사자의 영역으로의 입국 및 일시 체류는, 허용되
는 경우, 12개월의 기간 중 90일까지의 기간 동안이다.

3. 양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예술가와 그 밖의 문화전문가 및 실연자의
훈련 및 그들 간의 접촉 증대를 각자의 법령에 합치되게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가. 극장 공연물 제작자, 가수그룹, 밴드 및 오케스트라 구성원

나. 작가, 작곡가, 조각가, 엔터테이너 및 그 밖의 개인 예술가

다. 서커스, 놀이공원 및 유사한 고객유인 서비스의 직접 공급에 참여
하는 예술가와 그 밖의 문화전문가 및 실연자, 그리고

라. 사교무도장 또는 디스코장 서비스의 직접 공급에 참여하는 예술
가와 그 밖의 문화전문가 및 실연자, 그리고 무용 교습가

제 2 절 분야별 규정

제 1 관 시청각물 관련 규정

제 5 조 시청각 공동제작물

1. 이 의정서의 목적상, 공동제작물이란 이 의정서의 조건에 따라 대한 민국과 유럽연합 당사자 양측의 제작자가 투자하여 제작한 시청각물을 말한다.¹⁾

2. 양 당사자는 대한민국과 하나 또는 여러 유럽연합 회원국 간 새로운 공동제작협정의 교섭과 기존 공동제작협정의 이행을 장려한다. 양 당사자는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회원국이 대한민국과 하나 또는 여러 유럽연합 회원국 이 당사자인 기존의 또는 미래의 관련된 양자간 공동제작협정에서 정의된 바와 같이 공동제작된 시청각물에 재정적 혜택을 부여할 수 있음을 재확인 한다.

3. 양 당사자는 공동제작물에 각자의 지방/지역 문화 콘텐츠 진흥 체제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 부여를 통한 것을 포함하여,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당사자의 제작자간 공동제작을 각자의 법령에 합치되게 촉진한다.

4. 공동제작된 시청각물은, 지침 2007/65/EC에 의해 개정된 지침 89/552/EEC의 제4.1조 및 제3.1조, 또는 그 후속 개정에 규정된 바와 같이

1) 대한민국의 경우, 방송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 영화에 대해서는 영화진흥위원회가 운영하는 공동제작물에 대한 인정절차가 있다. 이 인정절차는 공동제작물이 제6항에 규정된 기준을 충족한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기술적 점검에 한정된다. 이 기준을 충족하는 공동제작물에 대해서는 인정이 부여될 것이다.

시청각물 진흥을 위한 요건의 목적상, 지침 2007/65/EC에 의해 개정된 지침 89/552/EEC의 제1(n)(i)조, 또는 그 후속 개정에 따라 유럽 작품으로서의 자격을 부여하는 형태로 제3항에서 언급된 유럽연합 당사자의 지방/지역 문화 콘텐츠 진흥 체제로부터 혜택을 받을 자격을 부여받는다.²⁾

5. 공동제작된 시청각물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9676호, 2009.5.21.) 제40조 또는 후속 개정의 목적상, *방송법*(법률 제9280호, 2008.12.31.) 제71조 또는 후속 개정의 목적상, 그리고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08-135, 2008.12.31.) 또는 후속 개정의 목적상, 대한민국 작품으로서의 자격을 부여하는 형태로 제3항에서 언급된 대한민국의 지방/지역 문화콘텐츠 진흥 체제로부터 혜택을 받을 자격을 부여받는다.³⁾

(공동제작물이 제4항 및 제5항에 언급된 각자의 지방/지역 문화 콘텐츠 진흥 체제로부터 혜택을 받는 자격은 다음 조건에 따라 부여된다.

가. 공동제작된 시청각물은, 대한민국 또는 유럽연합 회원국 각각에 의하여, 그리고/또는 대한민국의 국민 또는 유럽연합 회원국의 국민 각각에 의하여, 직접적으로인지 또는 다수지분에 의한 것인지 관계없이, 소유되고 그 소유가 지속되는 기업 간 실현된다.

나. 공동제작 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관리자가 각각 대한민국과 유럽 연합 회원국의 국적을 소유하며 그 영역 내에 거주함을 입증할 수 있다.

다. 애니메이션물을 제외하고, 각 공동제작된 시청각물에 대하여 유럽 연합 회원국 2개국의 제작자 참여가 필요할 것이다. 애니메이션물의 경우, 유럽연합 회원국 3개국으로부터의 제작자 참여가 필요할 것이다. 각 유럽연합 회원국의 하나 또는 복수의 제작자의 재정적 기여 비율은 10퍼센트 미만일 것이라는 아니 된다.

라. 애니메이션물을 제외하고, 공동제작된 시청각물에 대한 대한민국 의 제작자(모두 합하여)와 유럽연합 당사자의 제작자(모두 합하여)

2) 법령의 개정은 제10항의 적용을 저해하지 아니한다.

3) 앞의 주석과 동일

각각의 최소 재정적 기여는 시청각제작물 총 제작비용의 30퍼센트 미만일 수 없다. 애니메이션물에 대하여는, 이러한 기여는 총 제작비용의 35퍼센트 미만일 수 없다.

마. 각 당사자의 제작자(모두 합하여)의 기여는 효과적인 기술적 및 예술적 참여를 포함하고, 양 당사자의 기여 간 균형이 보장된다. 특히, 애니메이션물을 제외하고 공동제작된 시청각물에서 각 당사자 제작자(모두 합하여)의 기술적 및 예술적 기여는 그들의 재정적 기여와 비교하여 20퍼센트 포인트를 초과하여 차이가 나서는 아니 되고, 어떠한 경우에도 총 기여의 70퍼센트를 초과하여 차지할 수 없다. 애니메이션물에 대하여는, 각 당사자 제작자(모두 합하여)의 기술적 및 예술적 기여는 그들의 재정적 기여와 비교하여 10퍼센트 포인트를 초과하여 차이가 나서는 아니 되고, 어떠한 경우에도 총 기여의 65퍼센트를 초과하여 차지할 수 없다.

바. 유네스코 협약을 비준한 제3국 제작자의 공동제작된 시청각물에 대한 참여는 가능한 경우 총 제작비용 그리고/또는 시청각물의 기술적 및 예술적 기여의 최대 20퍼센트까지 수용된다.

7. 양 당사자는 공동제작물이 제4항 및 제5항에 언급된 각자의 지방/지역 문화 콘텐츠 진흥 체제로부터 혜택을 받는 자격 부여는 상호 혜택을 보장한다는 것과 제6항의 기준을 충족하는 공동제작물이 제6항의 기준에 추가적인 어떠한 조건 없이 제4항 및 제5항 각각에서 언급된 대한민국/유럽 작품의 지위를 부여 받는다는 것을 재확인한다.

8. 가. 공동제작물이 제4항 및 제5항에 언급된 각자의 지방/지역 문화 콘텐츠 진흥 체제로부터 혜택을 받는 자격 부여는 이 의정서 적용 후 3년의 기간 동안 설정된다. 국내자문그룹의 자문에 따라, 그 만료 6개월 전에, 문화협력 위원회는 문화다양성의 증진 및 공동제작물에 대한 호혜적인 협력이라는 관점에서 이 자격 부여의 이행 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조율할 것이다.

나. 이 자격 부여는 3년의 존속기간으로 갱신될 것이며, 그 이후에는

어느 한 쪽 당사자가 최초 또는 차후 기간의 만료 최소 3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자격 부여를 종료하지 아니하는 한, 그 이후 동일한 존속 기간만큼 추가로 이어지는 기간 동안 자동적으로 갱신된다. 각 갱신 기간의 만료 6개월 전에 문화협력 위원회는 가호에 언급된 것과 유사한 조건으로 평가를 시행할 것이다.

다. 양 당사자가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각각의 영역에서 이러한 공동제작물의 첫 번째 방송 또는 상영일이 관련 기간의 만료일 이전이면, 그러한 자격 부여의 종료는, 제6항의 조건에 따라 제4항 및 제5항에 언급된 각자의 지방/지역 문화 콘텐츠 진흥 체제로부터 공동제작물이 혜택을 받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9. 공동제작물이 제4항 및 제5항에 언급된 지방/지역 콘텐츠 진흥 체제로부터 혜택을 받는 자격 부여의 존속기간 동안, 양 당사자는, 특히 국내자문그룹을 통하여 제6항의 이행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러한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문화협력 위원회에 보고할 것이다. 문화협력 위원회는 어느 한 쪽 당사자의 요청으로 제4항 및 제5항에 언급된 지방/지역 콘텐츠 진흥 체제로부터 혜택을 받는 자격 부여 그리고/또는 제6항에서 언급된 기준을 검토할 수 있다.

10.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공동제작물을 위한 권리가 이에 언급된 다른 쪽 당사자의 관련 법령 변경의 결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경우, 당사자는 이에 언급된 자신의 지방/지역 문화 콘텐츠 진흥 체제로부터 혜택을 받는 자격을 2개월 전 사전 통지로 정지할 수 있다. 그러한 정지를 하기 전에, 통지하는 당사자는 문화협력 위원회에서 법령 변경의 성격 및 효과를 다른 쪽 당사자와 논의하고 검토한다.

제 6 조 그 밖의 시청각 협력

1. 양 당사자는 축제, 세미나 및 유사한 이니셔티브의 조직을 통하여 다

른 쪽 당사자의 시청각물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2. 양 당사자는 이 의정서의 제2조제2항에 언급된 대화에 더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을 통한 문화 교류를 증진할 목적으로 방송 분야에서 협력을 촉진한다.

가. 권한 있는 당국 간 방송 정책 및 규제의 틀에 대한 정보와 의견의 교류 증진

나. 방송 산업간 협력 및 교류 장려

다. 시청각물의 교류 장려, 그리고

라.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에서 개최되는 국제 방송 행사 방문 및 참여의 장려

3. 양 당사자는 시청각 기술의 양립성과 호환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제적이고 지역적인 표준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문화 교류를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 양 당사자는 이러한 목적을 위해 협력한다.

4. 양 당사자는 시청각물을 창작하고 기록하는 데 필요한 라디오 및 텔레비전 장비, 악기 및 스튜디오 녹음 장비와 같은 기술 자재 및 장비의 대여와 임차를 촉진하도록 노력한다.

5. 양 당사자는 시청각 기록보존물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 7 조

시청각물 촬영 목적을 위한 자재 및 장비의 일시적 수입

1. 양 당사자는 적절한 경우 영화 및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촬영 목적을 위한 장소로서 각 당사자의 영역을 홍보하는 것을 장려한다.

2. 이 협정의 상품무역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양 당사자는 문화전문가 및 실연자가 영화 및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촬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 자재 및 장비를 어느 한 쪽 당사자의 영역에서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으로 일시적으로 수입하는 것을 각자의 법령에 합치되게 검토하고 허용한다.

제 2 관

시청각 의 문화 분야의 증진

제 8 조

공연 예술

1. 양 당사자는 특히 오디션 참여, 네트워크의 개발 및 네트워크 구축의 증진을 도모하여 전문가 교류 및 훈련과 같은 분야에서의 공연 예술의 실연자 간 접촉 증대를 적절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각자의 법령에 따라 촉진한다.

2. 양 당사자는 대한민국 제작자와 하나 또는 여러 유럽연합 회원국 제작자간 공연예술 분야에서의 공동 제작을 장려한다.

3. 양 당사자는 적절한 표준화 기관을 통하는 것을 포함하여 국제적인 극장기술표준의 개발과 극장 무대 표시의 사용을 장려한다. 양 당사자는 이러한 목적을 위해 협력을 촉진한다.

제 9 조

출판

양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적절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다른 쪽 당사자와의 출판물 교류 및 전파를 각자의 법령에 합치되게 촉진한다.

- 가. 박람회, 세미나, 문학 행사, 그리고 공공 독서용 이동식 구조물을 포함한 출판과 관련된 그 밖의 유사한 행사의 조직
- 나. 공동출판 및 번역의 촉진, 그리고
- 다. 사서, 작가, 번역가, 도서관매자 및 출판업자를 위한 전문가 교류와 훈련의 촉진

제 10 조

문화 유적지 및 역사적 기념물의 보호

양 당사자는, 유네스코 세계 유산 보호 사업을 유념하면서, 전문가 교류, 전문가 훈련에 대한 협력, 지역민의 인식 제고의 촉진과, 역사적 기념물과 보존 지역의 보호와 문화재와 관련된 조치, 특히 문화재를 지방 생활의 일부로 통합하는 조치의 입법과 이행에 대한 자문을 통한 것을 포함하여 전문가의 교류와 문화 유적지 및 역사적 기념물의 보호와 관련된 전문 지식의 우수 관행의 교환을, 각자의 법령에 합치되게 그리고 이 협정의 그 밖의 규정에서 자신의 약속에 포함된 유보를 저해함이 없이, 적절한 프로그램들 내에서 장려한다.

MOTIE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